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28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간판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바. 네온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사.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아.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자. 기준 완화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차. 표시방법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카.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전화 042-600-5332, FAX 042-600-5049, E-mail : lgsung6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실명제)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허가·신고 연도, 일련번호, 해당 자치구 등을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 포함)로 제작하여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시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 자치구청장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조(간판의 총수량)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과 자치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 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지상변압기함
4. 교통카드 충전소
5.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6.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다만, 캐노피는 제외한다.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옥상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영 제20조에 따른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과 현수막 제작 및 색채기준은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네온류 사용 제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2.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치구청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7.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8.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10조(기준 완화 특정구역 지정)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정구역을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1조(표시방법의 강화)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 수는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다만, 그 표시내용이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어 허가권자가 심의를 의뢰한 경우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안전 검토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1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해당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별표 1]

간판의 총수량(제3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다. 그 밖에 자치구의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5.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 나.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다만,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은 제외 한다)
 - 다. 공연간판
 - 라. 하나의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 바. 물가 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자치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광고물등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가로형 간판

가.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나목 단서·다목 또는 라목 경우 및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 (2)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3) 물가 안정 등 국가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나.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라.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 (1) 간판의 세로크기는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여야 한다.
- (2)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마.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

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바.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2. 세로형 간판

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만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가목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0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다.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돌출간판

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나.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

계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바.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 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연간판

가.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라.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와 화면변환·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

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 기준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별표 4]

옥상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옥상간판

가. 5층 이상 건물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간판 간은 50미터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자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자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1호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자치구의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다.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1호에 따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6호 나목2)·3),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2. 지주 이용 간판

가. 건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2)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3)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1)부터 (3)까지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별표 5]

그 밖의 광고물등 표시방법(제6조제4항 관련)

1. 현수막

가. 일반적인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6)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7) 해당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3)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 (2) 게시시설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자치구청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지정게시대의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자치구청장은 제1호(5)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청장이 정하여 바에 따른다.

라.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단일형은 1개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다목에 따른 지정계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에 표시된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3)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②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마.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자치구의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3) 단서에 따른 애드벌룬은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자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4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3)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별표 4 제1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을 준용한다.

(7)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불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와 별표 4 제2호에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3. 벽보

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4. 전단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가. 자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마.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바.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사.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창문 이용 광고물

가.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 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가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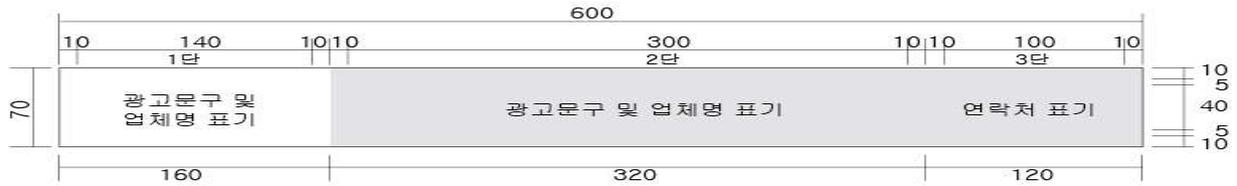
마.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별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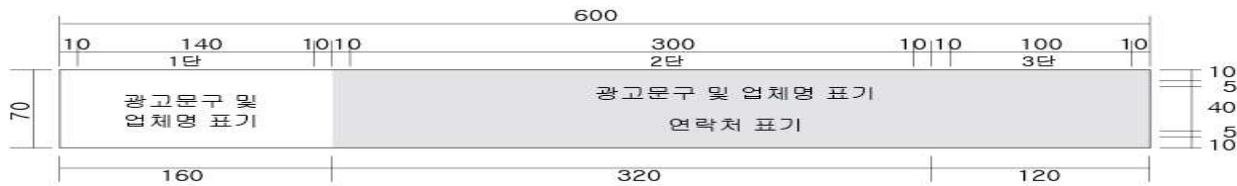
현수막 제작 및 색채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규격

(단위 : cm)



[3단 구성]



[2단 구성]

2. 표시방법

- 가. 현수막 크기 : 600cm × 70cm
- 나. 글자크기 : 가로 34cm, 세로 40cm
- 다. 글자체 : 자유
- 라. 광고내용 표시방법
 - 3단 구성 표시방법
 - 현수막 가장자리에서 좌·우 10cm, 상·하 15cm 안쪽에 표기
 - 가로방향 3단, 세로방향 2단으로 구성
 - 1·2단(광고문구 및 업체명 표기), 3단(연락처 표기)
 - 2단 구성 표시방법(광고문구가 길어 3단 표시가 어려울 경우)
 - 현수막 가장자리에서 좌·우 10cm, 상·하 10cm 안쪽에 표기
 - 가로방향 2단, 세로방향 2단으로 구성
 - 1단과 2단을 색으로 구분할 경우 명도차를 이용하여 구분

3. 색채기준

- 가. 자유색 사용(흑색류 및 적색류 제외)
- 나. 3단 구분 시 색상의 명도차를 이용
- 다. 바탕색에 로고, 그림, 사진 등 광고주 임의로 자유롭게 표현

[별표 7]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수수료(제14조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p>3,000원</p> <p>1,000원</p>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